

■■■ 특집 ■■■

IPTV 규제정책 논의 동향과 법제화 의미

이상호(KT 미디어본부), 김재범(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I. 서 론

저속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TV에 월드가든(Walled Garden ; 사업자의 의도에 따라 제한된 내용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nteractive TV서비스를 통칭함) 형태의 웹 페이지를 보여주는 인터넷TV 벤처사업자들이 투자자를 유혹하던 때가 있었다. 2007년에 상용출시된 KT ‘메가TV’와 같은 Pre-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와 비교해볼 때, 그 당시 서비스는 유료서비스라고 하기엔 보잘 것 없는 화면 구성에 저화질 VOD였다. 그러나, 그 같이 융합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네트워크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벤처사업자들에겐 당시 구현된 STB(Set top box)와 이미지의 화면만으로도 투자를 유치하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콘텐츠 규제에 대한 개념도 방송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고, 네트워크의 품질도 투자 받는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를 통해 가능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998년 국내에서 최초 상용화된 인터넷TV는 이듬해까지 대규모 투자에 성공하며, 주목을 끌었지만, 여전히 가입자는 늘지 않았다.

2000년 벤처 거품이 껴지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10여개가 넘는 회사들은 규모를 줄여가며,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사라졌다. 인터넷TV가 고객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시간방송과 융합되어 TV다운 서비스가 되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 콘텐츠급의 내용과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품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겨주었다.

뒤이어 소규모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을 시험 송출하면서 화질을 개선 시킨 VOD서비스(1.5세대 인터넷TV)가 출현하고, 상용서비스 지역이었던 강북구 케이블 사업자와 갈등을 빚으면서, 본격적으로 규제 정책의 공백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2008년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 초기모델인 1세대 IPTV, 인터넷 TV가 국내에서 상용화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고, 방송 통신 융합 규제 문제를 최초로 인식한 정부의 보고서가 나온 지 9년이 되는 해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상파를 재송신할 수 있는 IPTV 플랫폼이 2002년 잠시 선을 보이긴 했지만, 제 측면에서 초보적인 파일럿(Pilot)이었다.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가

IPTV 사업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선보인 것은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까지 진행된 정부의 IPTV 공동시범 서비스였다. 공동시범사업 이후 한동안 시범형태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주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규제 공백의 상태에서 논란이 많은 IPTV의 법제화를 진행해야 하는 KT는 시범 사업을 종료하였다.

한편, IPTV 법제화를 위해 최전방에서 통신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던 KT보다는 상대적으로 법제화의 부담을 적게 받고, 회사의 매각 방안 마련에 주력해오던 하나로텔레콤이 VOD를 다운로드하는 형태의 '하나TV'를 2006년 출시하고, 규제를 피해가자, 케이블방송협회는 강하게 반발하였다. 양자는 법정까지 가지 않았지만, 방송과 통신업계의 규제정책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할 시기였으므로, 하나로텔레콤의 사업출시를 바라보는 통신 산업계의 시각은 제각각이다. IPTV의 정의에 따라 기술 규격, 규제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ITU-T의 표준 워크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KT와 정보통신 관련 기관 및 학계 등은 '네트워크의 품질보장'을 전제로 하는 실시간 방송 및 VOD 등의 서비스가 IPTV라고 하는 IPTV의 정의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정의와 무관한, '네트워크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다운로드형 VOD 서비스'를 출시한 하나로텔레콤이 '적절한 매각 시기'를 잡기위해 경기장의 '출발 신호 위반'을 범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IPTV 시장의 경쟁자이자 동반자인 하나로텔레콤의 출발신호 위반 이후, KT는 오히려 내우외환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유는 IPTV의 법제화에 주력하다가 시장의 주도권

을 빼앗기고, 전략적 위치가 불리하게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IPTV 플랫폼을 보유한 KT는 내부의 압박 속에서 실시간 VOD 및 다운로드형 VOD 등 두 가지 형태의 1.5세대 IPTV(Pre IPTV)를 '메가TV'라는 브랜드로 출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규제정책의 미완으로 인해 실시간 방송채널을 송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IPTV 투자를 어느 단계에 얼마나 해야 할지, 관련된 기술 진화/단말 개발/서비스 구현/콘텐츠 수급 등의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IPTV의 규제정책 연구는 2005년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다양한 논의 끝에 2007년 11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짐으로서 2세대 IPTV(2세대 IPTV)의 본격적인 사업 출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는 방송과 통신 융합 관련 정부, 학계, 산업계에서 지난 수년간 가장 첨예하게 논의한 IPTV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최근 법제화가 이루어진 IPTV 법안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하기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주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IPTV 중심의 방송 통신 융합 정책논의 단계를 분석하고, 최근 법제화된 IPTV 법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의미를 분석한다.

II. 기존 문헌 연구

1. 방송통신융합과 IPTV 규제정책 연구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무수한 논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융합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IPTV와 같은 사업이 제대로 출시될 수 없었던 것은 방송과 통신의 산업과 규제의 속성이 극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의 경우, 방송이라는 매체의 속성을 강조하고, 사업 출시전 규제를 완전하게 준비하는 방송산업 ‘선규제 후사업’ 정책을 지향한다. 반면,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하는 통신산업은 시범사업 또는 선사업의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규제 강도를 결정하는 ‘선사업 후규제’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수년간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정부와 학계, 산업체 모두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왔고, 서비스 출시를 위한 서비스와 고객, 산업에 대한 논의보다는 규제기구와 융합법제와 관련된 논의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여주어 왔다.

방송이라는 관점에서 방송통신융합을 규제하는 데 대하여, 고객을 단방향인 방송시청자로 규정하고, 규제기관이 콘텐츠를 사전에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는 아날로그식 규제철학이라는 연구가 있었고, IPTV가 진정 필요한 서비스라면, 일단 통신의 부가서비스로 출시

한 이후, 서비스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성격을 재규정하자는 연구가 있었다^[6-7].

IPTV를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특성에 따라 매체를 구분하는 연구와 주장이 계속 되어 ‘매체 속성론적 관점’의 논쟁이 지속되었다. 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는 새로운 매체이므로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를 발표하였고, 방송위원회와 케이블협회는 기존 매체와 다를 바 없으므로 현존하는 방송법의 규제를 적용하자는 연구와 주장을 발표하였다.

반면,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IPTV와 같은 융합형 서비스가 네트워크나 플랫폼의 기술, 전달되는 콘텐츠의 내용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전혀 새로운 규제모델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연구를 발표하였다^[1].

2. IPTV 규제정책 논의 지연과 관련된 연구

뉴미디어에 대한 논의가 기술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규제모델과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출시 시기에 적용된 일반적인 규제정책의 전개방식이었다. 그렇지만, IPTV의 경우에는 사회문화적 영향보다는 규제모델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되어, 규제기관과 산업체가 방송과 통신으로 나뉘어 서로의 기득권과 생존권을 주장하는 형국으로 치달았다.

방송통신 융합관련 정책결정과정의 지연을 두고, 최적의 의사결정모델의 반대개념인 쓰레기통 모델(Garbage Can Model)로 규정하고 정책결정과정의 딜레마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었고, 방송과 통신의 정부와 산업체의 갈

1) IPTV의 세대구분은 기존 선행연구의 구분을 따르고 있으며, 실시간방송채널의 제공여부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였다. 일부에서는 채널의 제공 전후를 구분하여, Pre-IPTV와 IPTV로 구분하기도 한다.

등을 두고 지대추구이론(Rent Seeking Theory)으로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었다.^{[5][8][9]}

지대추구이론은 규제기구의 존립근거가 규제대상의 존재에 의존한다는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제 국가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나, 선진국에서는 규제당국과 사업자가 결탁하는 부패로서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발전 드라이브를 위한 필요악 또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경향이 있었다. 국내에서 방송과통신영역의 극한 대립은 외견상으로는 방송이 강조하는 공익논리와 통신이 강조하는 시장경쟁논리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지대의 추구를 통해 조직을 유지, 활성화하기 위한 갈등이라고 보는 견해의 연구가 있었다. 한편, 지대추구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방송통신융합 규제정책 수립시 지대추구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

특히, 지대추구이론 연구를 통해 방송통신융합 관련 규제기구와 사업자간의 예상되는 지대추구현상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방송영역에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가 기존 방송사업자와 공정하게 콘텐츠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인 프로그램 접근규칙(Program access rule)을 적용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3. IPTV 수용자/서비스와 관련된 연구

IPTV의 수용자에 대한 연구는 수용자가 IPTV를 TV의 경쟁매체 혹은 인터넷의 경쟁매체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3]와, 수용자 개인의 관점에서

주관적 규범과 같은 개인의 가치와 혁신성 등의 주도적 특성, 개인의 미디어에 대한 품질기준에 따라 사용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수용성 연구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은 세분화된 표적 고객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과 서비스 품질의 차등화를 통한 초기 기술적 한계의 극복,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고객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존 방송(케이블 및 위성)에서는 할 수 없었던, 고객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뮤음 상품(A la carte) 패키지의 제공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이점을 마케팅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IPTV의 본격적인 상용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점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규제정책에 대한 연구가 집중된 결과, 수용자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나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III. IPTV 규제 논의 전개와 법제화의 의미

1. IPTV 규제 논의 전개

본고는 방송통신 융합기구의 설립 또는 융합법안의 제정을 두고 그동안 방송과 통신 양 규제기관간의 갈등과 산업계의 대응에 대해 몇 가지 단계를 구분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IPTV를 중심으로 첫째, 융합문제 인식 및 탐색기, 둘째, 정권 출범 전후에 따른 갈등기, 셋째, 본격적인 IPTV 규제 갈등으로 발전된 정보통신부의 BcN 사업 추진과 IPTV

양육권 갈등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²⁾

또한, 연구자들은 법제화 진행과 법안의 의미에 대해 정리하였다.

가. 융합문제 인식 및 탐색기

초기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연구는 기술적 전망 내지는 법적, 정책적 대응에 대한 다소 관념적인 연구였으며 동 연구와 관련된 최초의 국내 연구성과는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담긴 방송 통신융합에 대비한 규제체계의 재정립 필요성 제시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안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후 본격적인 갈등은 2002년 3월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통합기구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미국의 FCC와 같은 통합 규제기구 모델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동일한 시기에 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의 정책 및 규제기구 개편방안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 강화”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법제도를 공동 연구하기로 하고, 방송위의 개편안에 대한 견제에 나선다. 이러한 방통규제기구에 대한 논쟁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 간의 <방송통신 정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나 주요 논의 의제는 지상파, 위성, 케이블의 정책이었다.

나. 참여정부 출범 전후에 따른 갈등기

2002년 말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가 정책통합조정기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관별로 참여정부 정권인수위원회에 각기 융합에 대비한 법제 정비방안을 보고하였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수면하에 있던 방송법 관련정책이 주도권 갈등 양상으로 시작되어, 데이터방송, DMB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으로 수습 되었다.

이 시기에는 새정권의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방송위와 문광부간의 정책 주도권 갈등이 심화되었고, DMB의 경우 초기에 방송법의 개정으로 방향이 잡히게 됨에 따라 정통부의 갈등은 다른 주체들에 비해 적었지만, DMC, IPTV의 별정방송 지정을 방어한 것을 주요한 성과로 보고 있다.

다. IPTV 양육권 갈등기

정보통신부의 BcN(광대역 통합망)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되어 등장한 IPTV로 인해, 본격적인 갈등이 2003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06년 7월 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34개 월간 진행이 된다. 이 시기를 융합서비스의 양육권 갈등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IPTV는 법제화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양육권 갈등기의 주요 정책 논의과정은 IPTV를 둘러싼 갈등과 수습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몇차례의 수습시도와 마무리로 세부단계를 분석하기도 한다.

이 기간동안 방송위는 IPTV 시범사업을 독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고, 정통부는 특별법 초안이 없다고 해명하고, 정통부의 BcN 시범사업에 지상파가 참여하지 않도록

2) 본고의 규제정책 논의단계에 대한 분석은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다. ^{[4][8]}

3) 방송위원회가 주최한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요약하였다. (2006. 1. 9)

〈표 1〉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IPTV관련 법률 제안의 특징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법률형태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	방송법 개정
법률추진 전략	IPTV 서비스 조기도입위한 입법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반적인 개편
새로운 규제체계	전송부문(네트워크와 플랫폼)과 콘텐츠로 이원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검토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로 3분류 (통신방송 포함)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검토
규제관할 기관	전송부문(정통부) / 콘텐츠부문(방송위)	방송위
대상서비스	IPTV, WiBro, DMB 등	유선 및 이동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IPTV에 대한 인식	광대역융합서비스로 접근	유선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IPTV의 진입	등록제(정통부)	허가제(방송위)
규제철학	선서비스 제공 후 규제	독과점 방지를 위한 선규제

방송위가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하는 등 규제정책기관간 갈등이 표면에 침예하게 드러나는 시기였다.

라. IPTV 법제화 진행과 의미

A. 양 규제기관의 법제화에 대한 입장 차이

정보통신부는 규제기관의 통합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융합서비스인 IPTV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서비스 활성화를 강조하였고, 규제기구와 관련된 논의는 규제기구의 통합시기나 방법 등 기구 통합을 위한 부처별 입장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논쟁이 가열되곤 하였다.

표 1은 2005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논의되었던 양 규제기관의 IPTV에 대한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IPTV를 규제하기 위해 양 규제기관이 제안한 법률안의 비교 표³⁾이다. 정보통신부는 등록제 등의 완화된 진입 및 내용 규제에 대한 후규제를 제안하고 있고, 방송위원회는 기존의 방송사업자와 같은 허가제와 선규제를 통한 강한 규제를 제안

하고 있다. 양 규제기관의 방송 통신 융합관련 견해의 차이는 정보통신부가 산업발전을 위해 IPTV 추진에 적극적인데 반해, 방송위원회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통합기구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프레임워크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방송 통신 개편에 대한 논의는 '기구 통합'을 전제로 진행되었으나, 통합기구의 위상과 위원회 운영방법 등에 대해 양 규제기관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당시에는 개편 논의도 양분되어, 학계/연구기관은 규제기구 개편(다소 적극적인 기구통합 논의)을 중심으로, 방송 산업계/언노련 등은 구조개편추진위 논의(단기적인 개편추진위의 위상과 정책 논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당시, 정부기관들은 규제기구 통합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대해 융합 관련 구조개편이 차기 정권으로 이양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규제기구 통합보다는 융합서비스인 IPTV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성격의 법률 제정 등 규제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으로 국회 중심의 법안 2005년 말

IPTV를 수용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으로 유승희 의원의 ‘정보미디어법안’과 김재홍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진행되었다. 상기와 같은 양 규제기관의 입장은 규제기구 개편에 대한 부분은 향후 약간의 변화를 보이나, 대체로 IPTV의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운영되는 2007년까지 평행선을 유지하게 된다.

IPTV 정부공동시범사업은 2006년 7월 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주도로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 논의되고, 사업자가 선정되어, 2006년 말부터 2007년초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이후 정부기관간 협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의 조정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결과를 놓고 저마다 다르게 분석하면서, 법제화는 진척이 되지 않았다.

결국, 법제화를 이뤄낸 것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아닌, 2007년 3월 구성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로, 국회 방통특위는 11월 전격적으로 법안 심사 소위원회 및 전체 방통 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속도를 내어, 한달만에 IPTV 관련 법안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라는 특별법을 의결하기에 이른다.

B. IPTV 관련 주요 법안의 분석

IPTV와 관련되어 논의된 주요 법안은 유승희 의원의 ‘정보미디어사업법’, 서상기 의원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 사업법’, 홍창선 의원의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 이용방송법’, 이광철 의원의 ‘유무선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의 특별법 형태의 법률안과 김재홍 의원과 손봉숙 의원 등의 ‘방송법’ 일부개정을 통한 IPTV 규제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각 법안의 미디어 전송사업자 면허방식은 대부분 허가를 통한 면허였으나, 서상기, 유승희, 이광철 의원은 채널등의 콘텐츠 사업자에 한해 등록 또는 일부 승인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업의 권역은 케이블방송업계가 방송위원회를 통해 지속 요구했던 내용으로, 손봉숙, 김재홍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이 케이블방송과 동일한 77개 권역을 담고 있고, 이광철 의원의 법안은 지역사업권을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법안들은 전국사업권역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IPTV 사업자가 대규모 통신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다, KT의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의 대주주이기도 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시장점유율 제한의 경우, 손봉숙, 김재홍 의원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유료방송 가구수의 30%내지는 33% 제한으로 한정하였다.

특이한 점은 IPTV의 규제관할 기구에 대해 유승희 의원의 한시적 기구안 외에는 대부분의 법안이 방송위원회가 규제관할 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구 통합이나 한시적 신설을 전제로 했을 경우, 사업의 출시가 더욱 늦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 대상 사업자 규정이나, 진입의 제한은 대동소이하며, 이러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융합추진위원회는 다수안 의결을 통해, 면허방식은 허가, 사업권역은 전국, 시장점유율은 유료방송시장의 33% 제한, 대기업 진입제한 없이 외국인 49%제한 등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C.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의미

국회에서 의결된 IPTV 특별법안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은 기존의 방송법

개정을 통한 진입이 아닌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기존 방송법의 규제내용과 IPTV가 서비스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기존의 방송법 개정을 논의했던 여러 가지 방안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 논의하는 규제의 범위는 유선 IPTV에 한정하여 규제하기로 하고, 무선 IPTV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인허가는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과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기존 방송법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IPTV의 국내 법률적 대안 명칭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 중략)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과 유사하게 방송 플랫폼사업자와 PP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를 구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제공사업자를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허가 기간 역시 5년으로 기존 종합유선방송과 동일하다. 다만, 사업권역이 IPTV 사업자가 전국 권역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초고속인터넷 통신네트워크가 지역별로 구분되어 서비스 하기 어렵다는 통신산업계의 입장은 받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방송 산업계가 77개 권역의 20% 범위내에서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방송

통신 산업계간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쟁점 중의 하나였는데, 이 법안은 통신산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중소 사업자가 요청하여 규제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권역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장점유율 제한은 방송권역별 국내 총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1/3 초과 금지로 하고, 법 시행후 1년간 1/5 초과 금지하도록 하여, 일부 인구 밀집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결영의 경우 신문 뉴스통신사의 지분제한을 49%로 적용하고, 외국인 지분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외에 공정경쟁을 위한 방송계의 우려를 감안한 지배력 전이 방지 조항, 통신계의 우려를 감안한 콘텐츠 동등 접근 조항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방송산업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자회사 분리 건은 반영되지 않아, KT, SKT와 같은 사업자도 자회사 분리 없이 본체에서 IPTV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그간 스카이라이프의 사례와 위성DMB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과, 해외의 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뉴미디어의 시장 진입과 초기 정착을 위한 후발 사업자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양 산업계의 견해이다.

IV. 결 론

본고는 방송과 통신 융합 관련 정부, 학계, 산업계에서 지난 수년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

어 논의되어 온 IPTV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고, 최근 법제화가 이뤄진 IPTV 법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융합 규제정책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최근에 진행된 IPTV 규제정책의 트렌드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의 의미와 규제방향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정부가 2006년말에서 2007년초까지 진행한 IPTV 공동시범사업과 이후 전개된 정부와 학계의 논의, 그리고 2007년말 국회 방통특위의 IPTV법안 의결 등의 규제정책 마련 등에서 보여준 긍정적 신호는 국내 시장에서 수년간 IPTV 사업을 준비해온 사업자들의 투자와 전략적 제휴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2008년 출범하는 새 정권은 정보통신부 폐지 등 방송통신융합을 다루게 될 대통령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IT정책 규제기구의 개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정책과 관련된 정부기구의 개편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IPTV 사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의 입장은 지난 수년간 규제 논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규제논의 마무리 시점에 실질적인 사업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기업들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전략대응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재원, 이상우,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방향-IPTV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0권 2호, 7-43쪽, 2006년 4월
- [2] 국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007년 12월
- [3] 이상우, 강재원, 신호철, 김윤정, “다매체환경에서 IPTV의 융합수용모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년 12월
- [4] 이상호, 김재범, “방송 통신 융합 관련 규제정책 논의 전개와 기업들의 대응전략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3권 3호, 147-176쪽, 2006년 9월
- [5] 이상호, 김재범, “방송과 통신정책, IPTV 융합정책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JITAM, 제14권 3호, 199-225쪽, 2007년 9월
- [6] 정윤식, “통신 방송 융합법제 및 정책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1권 3호, 49-87쪽, 2004년 9월
- [7] 정인숙, “국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도입에 따른 규제 모델 및 개념개발을 위한 모색”,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정책분과 학술세미나, 2005년 8월
- [8] 홍기선, 황근, “방송 통신 융합에 대응한 정부정책 평가 : 규제기구간 정책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주관 세미나 《방송 통신 융합의 정책이념과 실제》 발표논문, 2005년 2월
- [9] KT, “융합서비스의 발전적 진입 방안”, 경영연구소 보고서, 2006년 6월

저자소개**이상호**

1994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2003년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경영학 석사
 2007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 박사 수료.
 1994년~2003년 SK 전략/신사업/콘텐츠/미디어사업
 2004년~현재 KT 신사업기획실/미디어본부

주관심분야 : 방송 통신 융합, IPTV, 미디어, 콘텐츠,
 전략적 제휴

**김재범**

1986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1997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경영학 박사 졸업.
 1996년~1997년 영국 씨티경영대학원 연구조교수
 1997년~1998년 영국 런던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스탠포드대학교 경영공학과 방문교수

주관심분야 : 전략적 제휴, 디지털 컨버전스, 문화산업,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용 어 애 설

DB 투닝**Database Tunning [컴퓨터]**

데이터베이스(DB)를 조정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자동차가 엔진 투닝으로 이상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DB도 하드웨어나 DBMS 교체 없이 구조 개선, 인덱스 설정, 키 배치, 프로시저 이용 등의 투닝으로 성능을 개선한다.

현실 마이닝**Reality Mining, 現實- [데이터통신]**

핸드폰 통화정보를 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휴대폰을 통해 통화량, 통화위치, 통화상태, 대상, 내용 등을 분석해서 사용자의 인간관계, 행동특성 등의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放送通信委員會 [관리운용]**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하여 신설된 합의제 기구.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과 규제, 인터넷정책, 정보보안 기능에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과 규제, 방송진흥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5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2실, 3국, 7담당관, 34과가 있다.